

山林의 資源化와 山主參與

沈鍾燮

前 學術院會長 本會顧問

解 放後 우리나라 山林政策의 큰 脈 을 살펴보면 50年代는 山林保護를 為主로 하였으며 60年代는 山林綠化를 施策의 目標로 하였고 70年代 以後는 山林의 資源化로 그 方向을 轉換하여 왔다. 어언 40년이 지난 90年代는 名實相符한 資源化 實現에 모든努力을 경주하리라 期待된다. 이와같은 山林資源化 努力의 한例로서 獨逸의 경우를 생각 할수있다.

독일에서는 이미 300여年전에 오늘의 우리와같은 경험을 하였다. 즉 當時 山林의 過伐利用이 原因이 되어 荒廢가始作되자 未來에 對備하여 政府와 국민은 재빨리 山林再建 運動을 적극적으로 推進하였던 결과 오늘과 같은 저 훌륭한 山林資源을 造成하는데 成功하였다. 가까운 日本의 경우도 좋은 例가 될것이다. 第二次 世界大戰中 戰爭遂行을 위한 莫大한 量의 木材需要를 充當하다보니 곳곳에서 過伐狀態가 나타나 山林이 몹시 荒廢하기始作하였다. 그러나 戰後 재빨리 山林再建운동을 展開하여 造林에 迫車를 加하여 온結果 現在는 生產材의 處分에 苦心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는 이제부터始作이다. 資源化 目標는 셨지만 어떻게하면 이 目標 달성을 加速化하여 갈수 있을것인지? 그 對策의 成果가 分明히 可視化되었으면 한다. 그동안 政府에서는 제3次 資源化10개년계획등 여러 가지 施策들이 추진되어오고 있는줄 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重要한것은 山林所有者들의 自覺과 國民모두의 山林에 대한 識見이 새로워져야할 줄 믿는다. 一部 篤林家들을 除外하면 大部分의 山主들은 山林管理에 대하여 如前히 無關心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林業이 하나의 土地生產業이라는 見地에서 資源化를 생각한다면 오늘의 우리山林의 實相은 이제 겨우 初入段階에 들어서 있다고 하여야 할것이다. 이와같은 實相을 山主들은勿論 國民모두에게도 새롭게 認識할수 있도록 하여 90年代야말로 우리모두의 소망인 山林資源化 운동이 加速化 되어가도록 政府의 적극적인 分발이 加一層 要請되는 時期라 생각된다.

山은 自己의 所有이면서도 投資能力이 不足하다거나 能力은 있으면서도 投資意慾이 不進하여 관망만 하여오던 狀態에서 國土保存과 그밖에 公益을 名分으로 국가가 山主를 代身하여 山林再建에 投資하여야 하였던 既往의 事然들은 充分히 理解가 간다. 그러나 所有權 行使조차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무런 代價도 없이 때로는 本意아니게 엉뚱한 사람들에게 利得을 바쳐 버려야 하였던 不合理한 경향들은 이제 清算되어야 할 때가 온것같다. 自己의 財產이면 自己가 관리하여야할 責任이 있다. 또한 所有權을 行使할 권리도 있다. 自己 所有의 山林內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적고 크고간에 관

自己의 財產이면 自己가 管理하여야할
責任도 있고 所有權을 行使할 權利도 있다.
自己山林에서 生産되는 有形無形의 果實의 代價는
所有者에게 돌아가야 하고 他人이 山林을
利用할때는 이에 相應하는 代價를
支拂하여야 할것이다.

여하여야 하며 所有者의 승인도 없이 침범
당하여서도 안될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
고 아직까지도 山林은 公有라는 넓은 觀念
이 뿐리깊이 남아있어 所有者와는 無關한
것처럼 取扱당하는例를 많이 보아오고 있
다. 앞으로 이와같은 일은 반드시 是正되
어 가야하며 他人의 山林을 이용할때는 이
에 相應하는 代價를 支拂하여야 할것이다.
한편 自己山林에서 生産되는 有形 無形의
果實의 代價는 所有者에게 돌아가야 할 것
이다.

우리모두 잘 알고있는例로서 國立公園
의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現行法에 依하
여 국립공원으로 일단 指定이 되면 山林경
영에 施業上 必要한 撫育伐採는 勿論 그밖
에 施設등도 제한을 받는다. 管理는 건설
부가 맡아하고 이에따라 생기는 收入은 건
설부로 귀속한다. 山主는 自己 山林이 公
益이라는 美名으로 因하여 정발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한편 山火를 비롯하여 각종
山林被害 防止는 山林廳이 떠맡아야 하는
不合理한 官理體制下에서相互協助에 萬全
를 기하지 못하고 있는것도 事實인것 같다.
그뿐아니라 上水道를 위한 水源地一帶의
山林은 清淨水確保를 위하여 亦是 山主들
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이 所有權行使에 不

知不識中 많은 制限이 加하여지고 있는줄
안다. 이와같은 不合理한 實態는 非一非再
하다. 山林 所有者들은 언제까지 이와같은
징발상태를 감수만하고 있어야 할것인가?
이와같은 경우들은 早晚間 어떠한 山主들
의 山林投資 意慾을 높여가야 할것으로 굳
게 믿는다.

한편 山主들은 이제부터 山林의 資源化
를 위하여 可能한 方法들을 共同開發 하는
데 적극 참여하여 山林경영의 實利 創出에
主導的 役割을 맡아 나가야 할 줄 믿는다.
例로서 一定地域을 定하여 山林浴場, 樹木
園 캠프場, 수렵장 林間飼育場등과 같은 休
養施設등을 하여 有料入山을 許容하도록 하
는 方法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모든 국민들은 山林은 無主公山이
아니라 主人이 있는 所重한 個人的 財產임
을 인식하고 그 育林保護에 적극 協力하면
서 그 使用에 있어서는 언제나 깊이 감사
하는 마음과 더불어 이에 相應하는 代價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道德의인 마음 가짐을
잊어서는 안될줄 믿는다. 그리하여 90年代
는 名實共히 相符하는 山林資源化가 定着
되며 이나라 林業發展에 新紀元을 이루어
갈수있는 劃期的인 期間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